

【논 문】

##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전\*

전 경 선\*\*

### 차례

- I. 머리말
- II. 인민총복역법 논의 하의 선전공작
- III. 국병법의 공포와 선전공작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민 없는 국가’ 만주국의 징병제를 규정한 국병법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국병법 선전공작에 주목하여 도출하고자 한 시도이다.

태평양전쟁이 임박해질 무렵, 만주국에서도 대중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1939년 4월부터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결과 만주국 병역제도는 기존 지원제 방식의 모병제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국민 의무부담의 불균등, 질적으로 저하된 사병 등의 폐해를 안고 강제적 구속력이 없이 운영되던 기존 모병제로는 긴박감을 더해가는 시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 없는 국가’였던 만주국의 현실은 징병제 시행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선전공작은 막중한 임무를 띠 수밖에 없었다. 선전공작은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 선전공작의 주요 방침은 인민 일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789).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본제도 시행의 기본적인 선결조건이었으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였다.

1940년 4월 11일 상유와 더불어 제국 인민 남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병법 및 시행령 전문이 공포되었다.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된 만주국 국병법에서는 ‘精兵主義’를 채택하였고 ‘精兵의 양성’과 ‘良民의 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민지도요강』에 따른 국병법 선전이 전개되었다. 우선 징병의 당사자인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 전 예비교육 혹은 훈련을 적극 실시하였다. 기존 청년훈련을 담당했던 청년훈련소가 증설되고 학교 교련 역시 강화되었다. 한편 국병법은 징병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가족은 물론 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국민운동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중심에는 협화회를 비롯한 국방부인회, 만주적십자사 등의 관변단체가 있었다.

국병법이 공포, 시행되는 1940년 4월에 이르면 만주국 정부의 국병법 선전은 한층 더 가열되었고 이후 첫 번째 장정 입영이 있기까지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에도 국병법을 위한 대민선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기간 영화, 신문 모두 국병법 선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활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민선전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 없는 국가’라는 만주국의 현실의 벽을 쉽게 넘어설 수는 없었다. 애초에 만주국의 국병법은 단순한 병력 동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년은 물론 전체 대중들에게 국방의식, 국가의식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대중총동원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병법 시행의 의의는 그 선전공작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만주국, 국병, 징병제, 국병법, 선전

## I. 머리말

태평양전쟁이 임박해질 무렵, 일본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만주국에서도 필임(必任)의무병역제도인 징병제, 즉 국병법(國兵法)이 제정(1940년 4월)되었다.

1937년 시작된 일본의 대중국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유럽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더욱이 만·소 국경지역에서 소련과의 무력

충돌인 장고봉사건(1938), 노몬한사건(1939)에서 일본군이 잇달아 패배하면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안팎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만주국에서는 대중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39년 4월부터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공역과 병역제도를 분리하여 병역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징병제인 국병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기존 만주국군의 모병 방식인 지원병제를 질적으로 전환하여 일본인을 제외한 「제국인민」으로 적정 연령에 이른 성년 남자 모두에게 만주국군의 병사가 되어야 할 의무를 강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만주국은 그 지배 권력의 주장처럼 재만 각 민족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국민의식, 국방의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듯 국민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민중들을 대상으로 징병제인 국병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본 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게 하는 것은 녹록찮은 과정이었다. 따라서 만주국 정부에서 추진한 어떠한 국책보다 대민선전공작이 중요했던 것이 바로 국병법의 시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주국 정부는 인민총복역법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과 함께 선전의 3대 무기라고 불리는 신문, 라디오, 영화는 물론 온갖 미디어를 총동원해 만주국의 젊은이들을 만주국의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한 대민선전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징병제는 전시 인적 동원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만주국 징병제인 국병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sup>1)</sup> 다만 만주국 관련 연구서에 국병법 제정에 관한 내용만이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이다.<sup>2)</sup> 이러

1) 文繼斌, 2003, 『偽滿洲國時期的徵兵宣傳以《濱江日報》爲中心』, 『黑龍江史志』2013-23에는 기대되는 제목과 달리 『濱江日報』의 몇 기사만 소개하는 1쪽짜리 보고에 그치고 있다.

2)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一五年戰爭期を中心に—』, 時潮社, 1986, 172~175쪽; 沈潔, 『『滿洲國』社會事業史』, ミネルヴァ書房, 1996, 272~274쪽; 貴志俊彦, 2010,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 吉川弘文館, 157~163쪽. 傅大中, 1988, 『偽滿洲國軍簡史』, 吉林文史出版社, 407~410쪽 등에, 滿映의 국병법 선전영화에 대해서는 南龍瑞, 2010, 『『滿洲國』における滿映の宣撫教化工作』, 『アゾア經濟』51-8, 48쪽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한 상황은 징병대상자 파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적법조차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징병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만주국 징병제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징병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국병법 자체보다는 국병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덧붙이자면 인민총복역제 논의에서부터 국병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선전공작에 집중하여 그 속에서 국병법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나아가 만주국에서 징병제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하게 활용한 자료는 만주국 선전정책의 핵심기구였던 홍보처에서 발간한 기관지 『선무월보』와 만주국 정부의 대변지라 불렸던 신문 『성경시보』이다. 대략 1939년 5월부터 1940년 4~5월까지의 기간에 게재된 기사나 발간된 기관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참고하였다.

## II. 인민총복역법 논의 하의 선전공작

### 1.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만주국은 일본의 대중국침략이 장기화되고 소련, 몽골과의 군사충돌로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민중총동원에 의한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강덕5년(1938) 12월 15일 총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 부서, 일반 관계 관민을 위원으로 하는 兵役法調査準備委員會가 조직되었고 다음해 4월 위원회는 人民總服役主義에 의한 필임의무제를 채용하여 兵役과 公役의 양 제도를 두고 인민에게 균등하게 服役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국가 총력의 발휘에 필요한 인적 지원조직의 근본을 확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답신서

를 정부에 제출하였다.<sup>3)</sup> 4월 14일 정부에서는 본 답신서에 근거하여 人民總服役法準備調査에 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인민총복역법의 골간을 명시하였다.

人民服役法案은 우리나라의 兵制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본 안에 근거하여 滿洲國 服役法은 이미 國民總服役主義의 필임의무제를 채용하여 구체적 방면에서는 징병제에 의거한 兵役과 의무훈련제에 의거한 公役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목적은 현재의 모병제도를 징병제도로 바꾸어 精兵主義의 확립 및 새로운 公役제도의 수립을 기대하며 아울러 국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재교화와 재편성을 행하는 데에 있다.<sup>4)</sup>

이상 인민복역법안의 내용은 병역, 공역 두 부문 모두 의무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특히 병역제도의 경우 기존 지원제 방식의 모병제를 의무병제인 징병제로 전환하는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모병제 시기의 폐해를 제거하고 우수한 인재를 군대로 흡수함으로써 국군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정병주의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국병법 시행 이전까지 만주국의 병역제도는 康德4년(1937) 2월 4일부 軍政部, 民政部, 蒙政部 훈령으로써 공포된 모병제에 기반하여 유지되었다.<sup>5)</sup> 즉 각 軍管區 마다 할당제에 의해 필요한 병력 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만주국 남자를 대상으로 3년의 복무연한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시기 할당제에 의한 모병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만주국 모병제는 개인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 필요 인원을 차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모병은 필임의무제가 아니어서 그것을 강제할 법령이 없고 또 모병에 반대하거나 기피한다고 해도 그것

3) 滿洲國軍刊行委員會, 1971, 『滿洲國軍』, 正光印刷株式會社, 597쪽.

4) 『人民總服役法解說(二)』, 『盛京時報』, 1939年 5月 13日.

5) 『滿洲國軍募兵要綱』(康德四年二月四日 軍政部, 民政部, 蒙政部訓令), 滿洲國軍刊行委員會, 1971, 『滿洲國軍』, 正光印刷株式會社, 172쪽.

을 처벌할 벌칙도 없었다.<sup>6)</sup>

이러한 방식의 모병제로는 긴박감을 더해가는 시국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인 징병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국군을 재편해서 국방국가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과 日滿一德一心의 관계에 있었던 만주국은 중일전쟁 이후 장기화, 확대되고 있던 일본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즉 일본과의 공동방위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국군의 정비가 요청되는<sup>7)</sup>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모병제의 경우, 각 縣市에서는 중앙으로부터 할당받은 일정 수 만큼의 장정을 차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촌, 각 보갑 단위로 차출 인원을 할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향촌의 유력자, 부유한 자는 자신의 자제를 군대에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힘 없고 가난한 자 혹은 그들의 자제가 군대 지원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에서는 할당 인원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모병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노령자, 불구자, 병약자, 부랑자, 불량분자를 차출하는 경향이 많았고 금전 지불 계약에 의한 응모, 제대 후의 보증, 대역입영 등 여러 가지 악습, 범죄적 행위가 공연하게 행해졌다.<sup>8)</sup>

이렇듯 모병제에서는 국민 의무부담의 불균등, 아울러 병사의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 계층임으로 인해 초래되는 군대의 질적 저하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한다는 것 역시 징병제 시행의 중요한 이유였다.

전국 각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徵兵은 빈부 직업의 차별을 두지 않고 부담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국군 사병의 소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또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특히 기대할 만하다.<sup>9)</sup>

6) 滿洲國軍刊行委員會, 1971, 『滿洲國軍』, 正光印刷株式會社, 172~173쪽.

7) 『人民總服役法解說(一) 根本的再編國軍以期滿日共同防衛完壁』, 『盛京時報』, 1939年 5月 12日.

8) 滿洲國軍刊行委員會, 1971, 『滿洲國軍』, 正光印刷株式會社, 173쪽.

라고 했듯이 징병제로의 이행은 빈부, 직업의 차별 없이 적정 연령에 이른 모든 장정들을 잠정적 징병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병제 시기 국민의무부담의 불균등을 시정하고 나아가 징병검사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의 인적 자원을 군대로 흡수하고 이로써 군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39년 4월 정부는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성명 발표 후, 같은 해 10월 국무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조야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는 인민총복역제도심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인민총복역제도의 실시 준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0)</sup> 그 결과 1940년 2월, 공역제도와 병역제도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병역제도를 시행하고 공역제도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sup>11)</sup> 또한 본 인민총복역제도심의위원회가 제출한 兵役制度要綱案이 가결되었고<sup>12)</sup> 이로써 병역 복무 의무제인 징병제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 2. 인민총복역법 선전공작

1939년 4월 만주국 정부는 신문 및 라디오를 통해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인민총복역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략 1940년 3월말에 이르는 제1기 선전공작이 시작되었다.

만주국 병역법 선전은 국병법이 공포되는 1940년 4월을 기준으로 제1기(1939년 4월 ~ 1940년 3월)와 제2기(1940년 4월 ~ 연말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기 선전공작은 만주국 선전정책의 핵심 부서인 중앙의 홍보처에서 주관하였고, 제2기 선전공작은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국병법(시행)사무국이 중심이 되었다.<sup>13)</sup>

9) 『人民總服役法解説(二) 徵兵法殊堪期待』, 『盛京時報』, 1939年 5月 13日.

10) 『兵役制度確立』, 『盛京時報』, 1940年 2月 17日.

11) 『空前要綱案審議可決明年度頒布實行 總服役制與公役制決暫緩』, 『盛京時報』, 1940年 2月 17日.

12) 『空前要綱案審議可決明年度頒布實行 總服役制與公役制決暫緩』, 『盛京時報』, 1940年 2月 17日.

13) 『宣傳の實際-國兵法宣傳の現況(地方班)』, 『宣撫月報』, 1940年 9月.

병역법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제1기 선전에서는 선전내용의 지시를 비롯한 선전자료의 제작, 선전공작반의 파견 등 모든 것을 중앙의 홍보처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중앙의 지시사항을 선전하는 데만 머물렀다. 이로써 각 지방의 자의적인 선전과 쓸데없는 동요를 피하고자 하였다.<sup>14)</sup> 만주국의 징병제 선전은 그 어떤 국책선전보다 민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을 거듭하면서 진행되었다.

1939년 9월 28일부터 3일간 국무원 강당에서 『康德六年度各省弘報事務打合せ會議』가 개최되었다.<sup>15)</sup> 중앙에서는 총무장관을 비롯하여 홍보처장, 참사관, 각 주임, 지방 각성에서 25명의 홍보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본 의회에서 제시된 각성, 현에서의 인민총복역제선전에 관한 방침은 다음과 같다.<sup>16)</sup>

- 1) 인민 일반에 대해 만주국 국민이라는 자각을 강화한다
- 2)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그것을 수립하면 이제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다
- 3) 尙文卑武의 편견을 배제하고 國土防備, 兵民一體의 관념을 철저히 한다
- 4) 선전 실시에 즈음해서는 당분간 省을 중심으로 하고 協和會와 협력, 민간의 각 홍보기관, 만주적십자사, 국방부인회 등의 제 단체를 동원 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총복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들이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 의식, 국가 의식이 결여된 대중들을 상대로 公役이든 兵役이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민 의식, 국가 의식을 가진 국민의 창출이야말로 본 제도 시행의 기본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주국의 태생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14) 『總服役宣傳の今日まで』, 『宣撫月報』, 1940년 2월.

15) 『康德六年度各省弘報事務打合せ會議』, 『宣撫月報』, 1939년 10월.

16) 『省,縣に於ける人民總服役制宣傳』, 『宣撫月報』, 1939년 10월.

다음으로는 중국인이 전통적으로 가지는 군대, 군인을 천시하는 卑武사상을 버리고 국민과 군대가 일체가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징병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대중들의 對兵관념, 즉 군대, 군인을 천시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은 총복역제선전 기간뿐만 아니라 국병법 공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대병관념은 중국사회의 오랜 崇文卑武사상의 전통에다 구군벌시대의 사병에 대한 나쁜 인식이 더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국군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sup>17)</sup> 기존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복역제도선전에서 만주국 관변 민중동원단체인 협회회와의 협력은 물론, 민간의 각 홍보기관, 만주적십자사, 국방부인회 등의 제 단체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은 본 제도의 시행에서 대민선전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인민총복역제선전의 요령으로<sup>18)</sup> 1) 본 선전공작은 인민총복역제 선전이라 지칭하지 않고 모든 선전공작에 본 제도의 주지(主旨)를 가미해서 행한다, 2) 당분간 모병선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3) 兵役, 國防 등을 직접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연극 등 민중오락기관을 이용해서 勇士快擧, 俠士美談, 용사와 연애, 國軍美談 등을 언급해서 적극적으로 민의를 일으킨다는 등의 사전 선전공작을 진행한 이후에 본 제도의 직접적인 선전공작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즉 인민총복역제에 관한 대민선전의 기본은 ‘인민총복역’, ‘병역’, ‘국방’ 등을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친근한 연극 등의 매체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우선 대중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내용의 오락물을 접하게 하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국방의식을 불러일으키려 한 전략이었다. 이상과 같은

17) 『人民總服役法解說(二) 國軍已面目一新希望國民改正舊思想』, 『盛京時報』, 1939年 5月 13日.

18) 『省, 縣に於ける人民總服役制宣傳』, 『宣撫月報』, 1939年 10月.

사전 선전공작이 필요했다는 것은 만주국의 대중적 정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쉽사리 병역이나 공역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만주국 정부에서는 갑작스레 병역이나 공역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민중들의 거부감 혹은 저항을 극도로 우려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민총복역제선전은 이러한 사전 선전공작을 거쳐 직접적인 선전공작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는데 1)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인민총복역에 의한 종합적 국력의 발휘에 의한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2) 卑武 사상, 嫌勞사상은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철저히 한다, 3) 兵役, 公役은 인민 지상의 명예로서 빛나는 의무인 이유를 설명한다, 4) 군대를 강한 정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즉 군인은 국민 중 뛰어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5) 병역과 공역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설명한다 등을<sup>19)</sup> 강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인민총복역제를 어필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사전 선전공작을 거친 이후 단계에서는 인민총복역(제), 병역, 공역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국가, 국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과 공역의 이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인민 지상의 명예이자 빛나는 의무로까지 치켜세웠다.<sup>20)</sup> 특히 병역의 경우 군대의 질적 향상, 정예주의를 내세워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군인으로 선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냐 선전되었다. 결국 이러한 병역 선전의 논리는 만주국 징병제의 특징인 우수한 인재를 군에 입대시키는 精兵主義와 결합되면서 징병제의 본질을 더욱 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총복역제선전에는 신문을 비롯한 영화, 연극 등이 총동원되었다.<sup>21)</sup> 신문

19) 「省, 縣に於ける人民總服役制宣傳」, 『宣撫月報』, 1939年 10月.

20)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도입될 무렵 “병역이 일본신민으로서 가장 숭고한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작업이 전개되었다(최유리, 2000, 「일제 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蘭谷李銀順教授停年紀念史學論文集』 참조).

의 경우, 총복역제도에 관한 정부의 최초 성명 발표 이후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력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병영지 파견, 군사시설, 장비 등(軍備)의 견학, 종군, 기타 시찰 후 라디오방송 및 시찰기자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중들에게 총복역제의 내용과 나아가 그 의의를 알리는 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화 역시 인민총복역제선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전 매체였다. 이 기간 만주국 각지를 순회한 영사반이 본 제도의 선전을 위해 상영한 대표적인 작품은 문화영화 「우리들의 군대(我們的軍隊)」, 극영화 「국경의 꽃(國境之花)」 등이었다. 大同劇團, 安東劇團, 奉天協劇 등에서도 「사랑의 화살(愛的箭)」, 「호국의 어머니(護國之母)」, 「종군대오(從軍伍)」 등을 순회 상연하여 인민총복역제선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총복역제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 선전공작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병역 제도인 모병제, 즉 청년들을 군대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공작 역시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모병선전을 위해 省에는 모병선전위원회가, 縣에는 모병선전반이 설치되었다.<sup>22)</sup> 특히 징병제 시행 직전 해의 모병선전은 당해의 군인 모집뿐만 아니라, 다음해로 예정된 국병법 실시를 전제로 해서 그 효과가 국병법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23)</sup> 즉 모병선전을 통해 국병법 시행을 위한 포석을 깔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모병선전에 있어서도 총복역제선전의 주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말하자면, 국제정세와 국토방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런 까닭에 국군의 정비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국가 존립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군대는 국민개병에 의해 편성되어야 하고, 특히 정예 군대의 편성은 국가 흥융의 기초가 되며 국민의 군대 복역은 숭고한 의무이기 때문에 유능한 청년들이 앞장서서 모병에 응해야 함을<sup>24)</sup>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병선전에서는 그 효과가 국병법에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

21) 「總服役宣傳の今日まで」, 『宣撫月報』, 1940年 2月.

22) 「康徳七年度募兵宣傳計畫要綱(三江省公署)」, 『宣撫月報』, 1940年 1月.

23) 「管下縣市弘報要員打合會議議事要領(牡丹江省公署)」, 『宣撫月報』, 1940年 4月.

24) 「康徳七年度募兵宣傳計畫要綱(三江省公署)」, 『宣撫月報』, 1940年 1月.

해 1) 지원병(應募兵)의 입영을 성대하게 환송한다(縣, 市, 公署 및 각종 단체가 그것을 행하도록 한다), 2) 지원병을 격려한다(예컨대, 縣長 등은 (지원병의)격려를 위한 초연대를 배준다), 3) 입영 후 縣市長은 지원병의 병영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 결과를 지원병의 가정에 알린다 등의<sup>25)</sup>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징병제 실시 이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군인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군대에 지원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1940년에 들어서자, 각 지역별 군관구에서는 모병검사 성적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더욱이 모병검사를 통과한 청년들의 입영을 축하하는 떠들썩한 壯行會가 각지에서 이어졌다. 장행회는 사령관, 병사처장 등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계 인사들, 협화회 회원, 국방부인회 회원 등이 참가하는 성대한 의식으로 치러졌다.<sup>26)</sup> 입영자들은 장한 뜻을 품은 명예로운 국군으로 한껏 추켜세운 격려사와 환송 나온 관객들의 환호 세례를 받으며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만주국의 군인이 되어야 했다.

한편, 국병법 공포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940년 2월의 시점에서 만주국 정부는 기존 ‘兵役法’이라 불리던 징병제도의 명칭을 ‘國兵法’으로 바꾸었다. ‘役’이라는 글자가 만주국의 國情 상 적합하지 않다는<sup>27)</sup> 판단에서였다. 아마 ‘役’자가 대중들에게 불러 일으킬 거부감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국병법의 공포와 선전공작

### 1. 만주국 징병제의 내용과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9년 10월 인민총복역제도심의위원회가 조직된

25) 『管下縣市弘報要員打合會議議事要領(牡丹江省公署)』, 『宣撫月報』, 1940年 4月.

26) 『歡送應募勇士入營盛大舉行壯行會』, 『盛京時報』, 1940年 2月 29日.

27) 『兵役法將改稱決定爲『國兵法』』, 『盛京時報』, 1940年 2月 19日.

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공역제도는 잠시 연기하기로 하고 우선 병역제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40년 2월 본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兵役制度要綱案을 가결하고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1년(康德 8년)에 병역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sup>28)</sup> 이후 위원회의 요강안은 정부로 이관되었고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쳐 국병법 및 부속 법령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즉 4월 5일 정부가 위원회의 요강안에 기초하여 제출한 국병법 및 국병법시행령, 국병제도요강이 국무원 회의를 통과하였고 9일에는 본 제도의 중요성에 따라 황제 푸이 참석 하에 열린 參議府 회의의 자문을 거쳤다.<sup>29)</sup> 이어서 11일 上諭와 더불어 제국 인민 남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병법 및 시행령 全文이 공포되었고,<sup>30)</sup>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된 국병법의<sup>31)</sup> 「제국 인민인 남자는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닌다.」(제1장 總則 제1조)라는 조항에 의거해 만주국의 병역제도로써 필임의무제의 징병제가 시작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병역 연한을 3년으로 규정했으며(제2장 服役 제4조), 2) 國兵으로 징집된 자는 다음해 4월 1일에 입영하여야 했다(제2장 服役 제8조), 3) 前年 12월 31일부터 당해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연령 만 19세에 달하는 자는 壯丁檢査를 받아야 하며(제3장 徵集 제12조), 4) 제13조 家長은 壯丁適齡者가 있을 경우에 관할 본적지의 市街村長에게 보고해야 했다(제3장 徵集 제13조), 5) 壯丁檢査를 받은 자는 칙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素養, 家庭情形, 體格 등위에 따라 병역자에 적합한 자, 적합하지 않은 자, 적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로 구분하였다(제3장 徵集 제21조). 이상과 같은 내용의 칙령에 근거하여 만주국에서는 만 19세에 달하는 만주국의 남자를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入營, 3년 동안의 복무를

28) 「空前要綱案審議可決明年度頒布實行總服役制與公役制決暫緩」, 『盛京時報』, 1940年 2月 17日.

29) 「國兵法十五日可公布 陛下傳旨親臨審議」, 『盛京時報』, 1940年 4月 6日.

30) 「國兵法今日公布」, 『盛京時報』, 1940年 4月 11日.

31) 『滿洲國政府公報』 第1789號(康德7年 4月 11日)/國兵法(勅令 第71號), 國兵法施行令(勅令 第72號).

강제하는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만주국 징병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정 선발의 기준에서 뚜렷이 드러나듯이 ‘精兵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병의 기준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체격의 良否 이외에 장정의 소양, 가정환경의 요소가 아울러 포함됨으로써 모병제 하에서 지적되었던 군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선병 기준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징집될 국병의 숫자를 모병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국 장정 수의 약 1할 정도로<sup>32)</sup> 예상했던 것으로 볼 때, 만주국의 징병제는 통상적으로 애기되는 바와 같이 부족한 병력자원의 양적 확보를 위한 징병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군대에 징집함으로써 “정예병사(精兵)의 취득을 목적으로”<sup>33)</sup>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병주의 방침은 국병법 시행에 즈음하여 발표된 국무총리 담화(4월 11일)<sup>34)</sup>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強國은 반드시 精銳의 군대를 가져야 하고 정예 군대가 없으면 국토의 보전, 민생의 진흥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건국 이래의 모병제도를 바꾸어 획기적인 국병법제도를 확립하였다. 1년에 걸친 신중한 심의 결과, 앞서 결정된 병역제도의 요강에 기초해서 국병법 및 그 부속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본 법은 日滿共同防衛의 本義에 기초하여 정예 국군을 건설하고 인민의 中堅을 鍊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國情과 국민의 동향을 고려하여 精兵主義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징병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본 제도의 실시에 완벽을 기하고 국방의 강화, 국군의 융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담화의 내용에 의하면 우선 정예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 민생의 진흥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강국이 되는 길이었다. 더욱이 만

32) 『我國國兵法特徵置重點於良兵主義』, 『盛京時報』, 1940年 4月 12日.

33) 『我國國兵法特徵置重點於良兵主義』, 『盛京時報』, 1940年 4月 12日.

34) 『當國兵法公布張國務總理發表談話』, 『盛京時報』, 1940年 4月 11日.

주국을 둘러싼 내외 정세 역시 정예 군대의 완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지라 병역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만주국의 병역제도인 국병법은 ‘정예 국군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 ‘정병주의’ 방침을 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통상적으로 징병제를 통해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향했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만주국에서는 소수의 정예 군대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울러 정예 국군의 건설은 군대의 질적 향상, 즉 병사 자질의 제고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군대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군대교육령을 공포하였다.<sup>35)</sup> 군대교육령은 치안부에서 명시한 군대교육의 근본 이념을 기본으로 삼아 작성된 국군 교육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군의 사명, 2) 군대교육의 목적, 3) 건국정신, 4) 군인정신, 5) 군기, 6) 군대교육과 국민교육의 連環性, 7) 군대교육에서 군관의 지위 및 각오, 8) 自覺의 교육, 9) 교련연습, 10) 武技의 숙련 등이었다.

이상의 군대교육령에서는 무엇보다 군인, 군대의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군정신을 발양시키는 데에 집중하였다. 정신교육에 대한 주의는 이미 국군 建軍의 신 방침으로서도 제기되어 온 바인데,<sup>36)</sup>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신교육을 통해 건국정신을 실천하고 군인정신에 투철한 精兵, 즉 良兵을 양성하고자 함이었다. 즉 군대교육을 통해 日滿一德一心, 道義世界 顯現의 건국정신을 실천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고 또 헌신순국하고 武人정신의 本領을 발휘하여 자진해서 국난에 뛰어들 수 있는<sup>37)</sup> 자질을 가진 병사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교육의 목적은 “군인 및 군대를 훈련하여 전쟁의 임무를 완성하게 하고 동시에 국민의 中堅을 육성하고 이로써 나라를 이롭게 하

35) 『明示軍訓根本理念編成軍隊教育令』, 『盛京時報』, 1940年 3月 19日.

36) 『確立國防軍體制 建軍新方針概要 置重點於涵養注意精神教育』, 『盛京時報』, 1940年 2月 20日.

37) 『教育令要旨』, 『盛京時報』, 1940年 3月 19日.

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sup>38)</sup>으로 명시되었다. 국병법 시행의 목적에서도 거듭 명시된 바와 같이 군대교육은 병사를 훈련하여 전쟁의 임무를 완성하는 精兵, 良兵의 양성이라는 군사적 목적에만 머물지 않았다. 良兵의 양성이야말로 良民, 즉 인민의 중건을 연성하는 길이였다. 재영기간 동안 우수한 자질을 갖추게 된 병사는 퇴역 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소위 향토의 중건 정예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sup>39)</sup> 따라서 군대교육은 국민교육과 연결되고 良兵을 양성하는 것이 곧 양민을 만드는 것이며 국민의 模範典型을 도야하는<sup>40)</sup> 것이었다. 즉 군대교육은 優良한 정예 병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에서의 국민 중견분자를 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군대는 국민을 위한 훈련학교이자<sup>41)</sup> 양병양민 교육을 시행하는 국민의 일대 수양도장이었다.<sup>42)</sup>

이상에서 보듯이 만주국의 징병제는 정병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지만 인적 자원의 육성기관으로서 병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sup>43)</sup>

## 2. 국병법 선전의 전개

### 1) 「國民指導要綱」의 발표

만주국 정부는 징병제의 내용이 거의 확정되고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무렵인 1940년 2월 국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기존 협화회 조직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각 성에 국병법을 선전하고 후방국민운동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즉 협화회 중앙본부에 국병법시행국민지도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사무국을 설치하

38) 「教育令要旨」, 『盛京時報』, 1940년 3월 19일.

39) 「以郷土中精銳分子育成優秀國軍(花谷顧問談)」, 『盛京時報』, 1940년 4월 12일.

40) 「教育令要旨」, 『盛京時報』, 1940년 3월 19일.

41) 「我國國兵法特徵置重點於良兵主義」, 『盛京時報』, 1940년 4월 12일.

42) 「施行良兵良民教育訓練成國民中堅 于治安部大臣訓示各國」, 『盛京時報』, 1940년 4월 15일.

43)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1986,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一五年戰爭期を中心に—』, 時潮社, 175쪽.

며 省에는 국민지도성위원회, 성사무국을 설치하고 현, 기, 시에는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협화회 사무장 아래 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었다.<sup>44)</sup>

아울러 이들 위원회 활동의 지침으로서 「국민지도요강안」의 대강이 발표되었다. 국병법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중들을 지도 훈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요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외에 선전, 국민운동 세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sup>45)</sup>

2월 29일 인민총복역제도심의위원회 총무 제2분과회가 개최되어 「국민지도요항안」에 관한 협의 결과, 최종안이 결정되었고 즉시 국병법시행국민지도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sup>46)</sup> 국민지도위원회 중앙위원회는 협화회, 치안부, 홍보처를 주체로 협화회 중앙본부에 설치되고 협화회 중앙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사무국은 협화회중앙본부 내에 설치되고 국장은 협화회 실천부장이, 부국장은 무토 홍보처장이 맡았다.

29일 회의 결정에 따라 각 성에서도 국민지도성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었다. 國民指導熱河省委員會(열하성),<sup>47)</sup> 國民指導奉天省委員會(봉천성),<sup>48)</sup> 國民指導濱江省委員會(빈강성),<sup>49)</sup> 國民指導間島省委員會(간도성)<sup>50)</sup> 등이 설치되어 이후 성 단위의 국병법 선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어서 3월 9일 국병법시행국민지도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국민지도위원회의 조직 및 지도기구정비요강에 관한 협의, 예산 설명 등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민지도요강」이 결정되었다.<sup>51)</sup> 그 내용은 이미 「요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 국병법 시행의 취지 철저, 2) 청소년 훈련 및

44) 「徹底普及國防觀念 國民指委會組成 中央及省本部設置事務局」, 『盛京時報』, 1940년 2월 22일.

45) 「國民指導要綱 對宣傳訓練等部門活動」, 『盛京時報』, 1940년 2월 22일.

46) 「徹底普及國兵法意義設國民指委會已着手本格的運動」, 『盛京時報』, 1940년 3월 2일.

47) 「國兵法指導實施熱河省結成委員會」, 『盛京時報』, 1940년 3월 27일.

48) 「翊贊國兵法施行設國民指導奉天省委員會 今日開首次會議」, 『盛京時報』, 1940년 4월 6일.

49) 「國兵法實施徹底宣傳特設國民指導委員會 協和會省本部規定慶祝行事」, 『盛京時報(濱江特刊)』, 1940년 4월 11일.

50) 「期樹立明朗國防觀念國兵法指導委員會結成對紀念行事決盛大舉行」, 『盛京時報』, 1940년 4월 14일.

51) 「國兵法 國民指導中委員會會議實施要綱 定九日開第一次會議」, 『盛京時報』, 1940년 3월 9일; 「國民指導要綱決す 國兵法施行國民指導中央委員會第一回の成果」, 『宣撫月報』, 1940년 3월.

학교 교련의 확충, 3) 후방국민운동의 강화, 4) 마찰 장애의 저지 등이었다.

특히 국가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고 있던 만주국의 특수성 상 국병법 시행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징집의 당사자였던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국병법 시행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다음은 「요강」의 첫 부분에 제시된 「국병법 시행의 취지 철저」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와 민간 각 기관의 선전기능을 통일 강화하고 선한 사람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근저로부터 시정하고 국토방위의 정신에 기본적인 국병법의 취지를 철저히 하는 데 힘을 터인데 그 목표를 국민생활의 안정 확립에는 국군의 강화가 절대 필요한 것을 통감하게 하고 국토방위의 연대책임은 필임의무제에 기초한 국병법으로 귀일한다는 점, 또 군사원호의 철저에 의해 군인은 가족 걱정 없이 군무에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거의 對兵관념을 일소하는 데 두고 국민지도의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 국민의 계몽에 전력을 기울인다.<sup>52)</sup>

이상에서 볼 때, 만주국 정부에서 국병법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여긴 것은 중국인이 가진 「선한 사람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好人不當兵)」라는 오랜 통념이었다. 그것은 역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崇文卑武 사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가깝게는 신해혁명 이후 군벌시대의 군인들로부터 받은 인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에 들어 모병시기 자의로든 타의로든 입대했던 자들 역시 극빈계층이나 불량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좋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군대에 가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병법 선전은 대중들이 가진 기존의 對兵관념을 시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sup>53)</sup>

52) 「國民指導要綱決す 國兵法施行國民指導中央委員會第一回の成果」, 『宣撫月報』, 1940년 3월.  
53) 덧붙이자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대병관념을 불식시키고 더욱이 국병법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인용문에 언급된 바의 군사원호(사업)이다. 국병법의 시행과 함께 「軍人優遇法」, 「軍人優遇要綱」 등이 공포되면서 만주국의 군사원조사업은 단순히 군인가족에 대한 생활구제에 머물지 않고 군인을 우대하고 병역에 복무하는 것

다음으로는 국병법 시행의 主旨 혹은 趣旨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필임 의무병역제도인 국병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즉 강한 군대는 국토방위, 국민생활 안정의 필수조건이며 군대를 강화하는 불가결한 조건은 필임의무제에 의거한 국병법의 시행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체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대민선전의 성패에 국병법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만주국 정부는 국병법 실시 이전 전국 대규모 국병선전을 결정, 3월 28일부터 3일 간 전국 선전협의회라 할 수 있는 各省弘報事務協議會를 개최하였다.<sup>54)</sup> 본 회의에는 중앙에서 총무청 차관을 비롯하여 홍보차장, 협화회 홍보과장, 관동군 보도반장, 만주영화협회 참여 등 각 관계관과 지방에서는 신경특별시 서무과장 이하 각성 홍보사무담당자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1940년도의 중요 문제로 ‘국병법 실시와 통계경제계획 철저’ 두 가지를 들었다. 특히 국병법의 선전에 대해서는 국민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히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협화회와 협력 제휴할 것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국병법 공포와 함께 발표된 상유<sup>55)</sup> 그리고 張景惠 국무총리의 담화,<sup>56)</sup> 동월 15일 국병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 치안부대신, 민생부대신 세 대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서도<sup>57)</sup> 대중들이 국병법 시행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적극 협조해야 함을 거듭 역설하였다.

## 2) 국병법 시행을 위한 대중총동원

국병법이 공포되고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 돌입하면서 『국민지도 요강안』에 명시된 바의 선전, 훈련, 동원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징병

을 국민의 영광스런 의무이자 명예로운 권력이라는 관념을 배양하려는 사상교육운동으로 전환해 갔다(沈潔, 앞의 책, 277~279쪽 참조).

54) 『謀國兵法實施徹底展開偉大宣傳陣 舉開各省弘報事務協議會』, 『盛京時報』, 1940년 3월 29일.

55) 『上諭』, 『盛京時報』, 1940년 4월 11일.

56) 『當國兵法公布張國務總理發表談話』, 『盛京時報』, 1940년 4월 11일.

57) 『我政府闡明國兵法頒發重要佈告全國臣民應共休斯旨』, 『盛京時報』, 1940년 4월 16일.

의 당사자인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 전 예비교육 혹은 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년 훈련을 목적으로 한 청년훈련소가 증설되었는데, 특히 농촌에서는 16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청년의 거점 훈련소인 靑年塾이 설치되었다.<sup>58)</sup> 만주국의 청년훈련은 이미 1937년 1월 28일 군정, 민정, 몽정 3부의 공동 부령으로 발표된 「暫行靑年훈련규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결정되었다.<sup>59)</sup> 청년훈련의 목적은 “청년의 심신을 도야하며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고 경비 및 국방의 유지능력 증강에 기여함”에 있었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청년훈련의 시행은 협화회 현기시 및 수도 본부가 수행하며 실시기관으로서 청년훈련소가 설치되었다.<sup>60)</sup> 훈련과목은 교련과와 공민과로 대별되었는데 전자는 군정부대신이 정한 武技, 部隊教練, 陣中勤務 등의 군사훈련과 체조로 구성되었으며, 후자는 ① 협화정신(건국의 의의 및 건국정신의 철저화, 협화운동의 이해, 기타 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제, ③ 후생, ④ 산업, ⑤ 일본어와 기타 지방 실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국병법이 공포될 시기에 즈음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의 청년훈련은 청년훈련소의 신설과 함께 강화되어 나갔다. 가령 協和會龍江省本部에서는 관할 하 청년훈련소의 강덕7년도 훈련실시계획과 주임지도원의 임명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2개월 반에 이르는 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sup>61)</sup> 앞서 언급한 군대교육령의 내용, 특히 건국정신의 철저화 등의 정신교육과도 일면 중첩되는 청년훈련을 국병법 공포와 더불어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국방의식을 일깨우고 심신 양면에서 징병제를 수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학교 역시 국병법 시행에 상응하기 위해 군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군국주의화도 가속화되었다. 치안부와 민생부에서는 武官配屬을

58) 『國民指導要綱 對宣傳訓練等部門活動』, 『盛京時報』, 1940년 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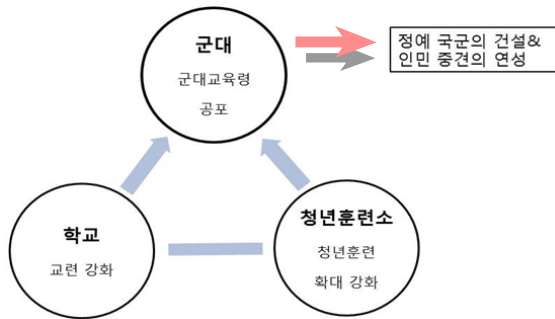
59) 청년훈련에 대해서는 임성모, 1997, 『滿洲國協和會의 總力戰體制 構想 研究 -‘國民運動’路線의 摸索과 그 性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103쪽 참조.

60) 청년훈련소는 1940년 5월 당시까지 수도 신경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성에 합계 164개가 설치되었다(임성모, 1997, 위의 논문, 103쪽).

61) 『訓練國民中堅靑年五一各市縣旗起始』, 『盛京時報』, 1940년 4월 23일.

공포하여 학교 교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62)</sup>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신청하면 바로 배속장교, 즉 군사교관이 파견됨으로써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이 본격화 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중소학교용 교과서를 개편, 국병법 시행의 과제를 추가하도록 하였는데,<sup>63)</sup> 이것은 어린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 필임의무의 징병제를 주입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렇듯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청년훈련소,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징병의 당사자인 청년층에 대한 광범위한 동원과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국민정신, 필임의무관념 양성과 아울러 국방유지능력의 증강을 꾀함으로써 국병법의 원활한 시행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국병법은 징병 당사자인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인 장정의 경우 입영으로 인한 부재로 초래하게 될 가정 내의 경제적 손실이나 독자인 장정의 경우 입영 기간 전사하게 된다면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입영에는 나머지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 대중을 대상으로 후방국민운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병법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시키고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62) 『與國兵法互相呼應實施學校教鍊』, 『盛京時報』, 1940年 5月 11日.

63) 『軍國教育化 國兵法眞意義向學校教育浸透 將國兵必任義務編入課本』, 『盛京時報』, 1940年 5月 12日.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후방국민운동의 중심에는 협화회가 있었고 각계 각층의 대표적인 관변단체가 협력하였다.<sup>64)</sup>

국병법이 공포, 시행되는 1940년 4월에 이르면 만주국 정부의 국병법선전은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국병법 공포일(4월 15일) 이전부터 수도新京(新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국병법 시행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했다. ‘만주국 정부의 대변지’라고도 일컫던 『盛京時報』는 국책의 충실한 선전자로서 이러한 전국 각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국병법사무국에서는 국병법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병법공포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을 전후한 시기 전국 각지에서 거행할 행사의 대강을 제시하였다.<sup>65)</sup> 평톈(奉天)시에서도 국병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당일 기념행사를 미리 결정하였다. 즉 가가호호 국기계양, 버스, 전차에 국군정신을 고취하는 표어 부착, 국군 부대의 시내 행진, 비행부대의 공중 전단 살포, 청소년단 협화의용봉공대원 등의 경축기를 든 가두행진, 제1군관구사령부 및 관계 주요 기관 방문 및 만세삼창, 국군상이군인, 현역군인 가족 초대 위안회 개최, 각 학교에서의 국병법 강연 개최, 평톈방송국의 제1군관구사령관과 평톈성장의 국군에 관한 강연 방송 등의<sup>66)</sup> 기념행사를 통해 국병법 시행 자체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4월 11일 국병법에 관한 국무총리의 담화가 발표되고 4월 15일 공포 당일에는 치안부대신의 훈시, 치안부최고문의 담화, 제1군사령관의 담화, 협화회중앙본부장의 담화가 이어졌다.<sup>67)</sup> 국병법 시행 당일, 전국 각지에서는 대중들에게 국병법을 알리고 나아가 그 취지를 선전하기 위해 떠들썩한 기

64) 『國兵法 國民指導中委員會議實施要綱 定九日開第一次會議』, 『盛京時報』, 1940년 3월 9일.

65) 『紀念國兵法公布日全滿作熱烈慶祝 性質之重大視爲第二建國』, 『盛京時報』, 1940년 4월 7일.

66) 『國兵法施行紀念全市民意氣昂揚 紀念當日諸事業經決定』, 『盛京時報』, 1940년 4월 10일.

67) 『施行良兵良民教育訓練成國民中堅 于治安部大臣訓示各軍』, 『盛京時報』, 1940년 4월 15일; 『國兵法爲第二建國 松井治安部最高顧問談話』, 『盛京時報』, 1940년 4월 15일; 『國兵法實行日 橋本中央本部長談話』, 『盛京時報』, 1940년 4월 15일; 『國家精神大革命 王第一軍司令官談話』, 『盛京時報』, 1940년 4월 15일.

념행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수도 신징에서는 국기계양, 시내행진, 군인가족 위문, 영화 상영, 강연 개최, 신문, 라디오를 통한 국병법 기념 경축 실황 방송, 선전전단 및 표어 제작 배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sup>68)</sup>



<협화회 수도본부가 배포한 국병법 시행 선전그림> (『盛京時報』, 1940년 4월 14일)

경축 국병법 시행(慶祝國兵法施行)  
 國兵制度는 強國의 근본(國兵制度是強國之本)  
 선한 사람은 나라의 군인이 된다(好人爲國當兵)  
 국병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영예(當國兵是我們的榮譽)

<국병법 경축 표어(『盛京時報』, 1940년 4월 16일)>

만주국 국병법은 공포 이후 첫 번째 장정 입영이 있기까지는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국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민 선전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병법 선전에서 중요하게 활용된 미디어 중 하나는 영화였다. 만주국에서는 일찍이 영화가 가지는 선전효과에 주목하여 국책선전에 적극 활용하였다. 1937년 8월에는 만주국 국책영화회사 만주영화협회(이하 만영)가 설립되었다.<sup>69)</sup> 만영은 국병법선전 영화반을 조직하여 만주국 각 지역을 나누어 순회상영을 실시하면서<sup>70)</sup> 국

68) 『國兵法實施紀念首都展開大慶祝喚起市民速來當兵』, 『盛京時報』, 1940년 4월 16일.  
 69) 만영의 국책선전에 대해서는 홍수경, 2007, 『만주국의 사상전과 만주영화협회, 1937~45』,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70) 『宣傳 滿映赴東滿作巡迴公演』, 『盛京時報』, 1940년 4월 7일; 『滿映 國兵法宣傳映畫班巡迴北滿收得成果』, 『盛京時報』, 1940년 4월 9일.

병법 선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시기 국병법 선전을 위해 상영된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들의 군대(我們的軍隊)」(감독 大谷俊夫), 「국경의 꽃(國境之花)」(1939년 제작, 감독 水江龍一) 등이었다. 「우리들의 군대」에서는 국병으로 열심히 복무하는 병사들의 병영 생활을 담았고, 「국경의 꽃」에서는 만주국 동부 滿蘇 국경 부근 모흔의 용감한 청년 알탄, 그의 친구 지아버, 연인 시빠오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소 국경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두 청년의 군관학교 입학과 졸업 후 무용담, 그 가운데 외몽골 소련 간첩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리어 노몬한사건에 관한 기밀문서를 훔쳐낸 연인 시빠오의 활약을 그렸다.<sup>71)</sup> 또한 만영의 계민영화부에서는 치안부 지도 하에 제1회 징병제도 실시 후 입영한 국병들의 실제 병영생활을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뉴스영화 「병영통신(兵營通信)」의 제작에 착수하였다.<sup>72)</sup>

신문 역시도 인민충복역제 선전에 이어 국병법 선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활약을 하였다. 가령 성경시보, 大同報, 大北新報 연합 주최로 국병법의 취지를 선전하기 위해 「國兵法의 실시와 우리들의 각오(國兵法實施與吾人之覺悟)」라는 제목의 현상논문 모집에도 나섰으며,<sup>73)</sup> 특히 성경시보에서는 국병법 공포 후 대중들에게 국군과 군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아울러 군대 생활의 기율 등을 소개하기 위해 본사의 특파원을 제6군관구 내의 병영에 파견하여 「第六軍管區巡禮」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하였다.<sup>74)</sup>

1941년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에 징병검사(壯丁檢査)가 시행된 이래, 6월 1일 국병법 시행 이후 최초로 國兵이 입영하였다. 이것을 기념하여 우정총국에서는 2분과 4분 두 종류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sup>75)</sup>

71) 「放映諸影片之梗概」, 『盛京時報』, 1941년 6월 5일.

72) 「滿映新聞片拍製『兵營通信』」, 『盛京時報』, 1941년 6월 12일; 「國兵入營實景 滿映即將着手開攝」, 『盛京時報』, 1941년 6월 15일.

73) 「懸賞募集論文」, 『盛京時報』, 1940년 4월 9일.

74) 「第六軍管區巡禮(一)」, 『盛京時報』, 1940년 4월 27일.

75) 1940년 1월 만주국 郵政總局에서는 郵便科에서 담당하던 우편우표류 발행 등의 사무를 企劃科로 이관하고, 기획과 아래 새로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弘報股를 설치하면서 우표, 그림엽서, 소인 등을 우정뿐만 아니라 선전장치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표의 홍보기능에 대해서는 貴志俊彦, 앞의 책, 155~157쪽 참조.



<국병법 시행 기념우표>〔宣撫月報〕, 1941年 5月)

이렇듯 1939년 4월 만주국 정부의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성명 발표 이후 전방위로 전개되는 대민선전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동향은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만주국 당국의 기대치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sup>76)</sup> 선전 담당자들 역시 국병법 선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역 또는 대상을 상세히 관찰할 때는, 여전히 금후의 지도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정보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을 보면 동북부 국경지방, 間島, 熱河省 등에서는 지세가 외지고 멀어 불령분자의 역선전 등으로 인해 국병법의 취지를 곡해해서 국외로의 도피, 연령의 사칭, 혹은 부인 특히 장정을 가진 주부 계급의 불안 동요 등이 보이고 또 興安 방면에 서는 일부 라마승의 기피적 언사도 보이고 있다.<sup>77)</sup>

우선 지역적으로 볼 때, 변경의 오지에는 여전히 국병법 선전공작이 제대로 침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전공작의 한계일 수도 있으나, 수도 신징을 비롯한 대도시를 벗어난 변경 지역까지 만주국의 행정이 미치지 못했으며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국병법을 비롯한 국책을 선전하는 매체인 신문이나 라디오 등의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76) 『規避兵役思想今後當可根絶』, 『盛京時報』, 1940年 4月 12日; 『宣傳の實際-國兵法宣傳の現況(地方班)』, 『宣撫月報』, 1940年 9月.

77) 『宣傳の實際-國兵法宣傳の現況(地方班)』, 『宣撫月報』, 1940年 9月.

초래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대상으로 볼 때, 특히 장정의 어머니나 처의 불안 동요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의 경우 아들이나 남편이 국병이 되면 혹시 전사해서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마 승려들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병법 자체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병법이 대중에게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국민 없는 국가’라는 부정할 수 없는 만주국의 현실,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 V. 맺음말

태평양전쟁이 임박해질 무렵, 만주국에서도 대중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1939년 4월부터 필임의무제에 기반한 징병제에 의한 兵役과 의무훈련제에 의한 公役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총복역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만주국 병역제도는 기존 지원제 방식의 모병제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중일전쟁이 확대, 장기화되고 게다가 만소국경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일본과의 공동방위전선을 강화하고 아울러 만주국 자체의 군사적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국민 의무부담의 불균등, 열악한 사병의 소질 등의 폐해를 안고 강제적 구속력이 없이 운영되던 기존 모병제로는 시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임의무제인 징병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 없는 국가’였던 만주국의 현실은 징병제 시행을 관철시키려던 정부의 의도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선전공작은 막중한 임무를 띠 수밖에 없었다.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본 국책을 선전하는 제1기 선전공작(대략 1940년 3월말까지)이 시

작되었다. 이 시기 선전공작은 만주국 선전정책의 핵심 부서인 홍보처에서 주도하였고 만주국의 어떤 국책선전보다 민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을 거듭하면서 진행되었다.

1939년 9월 『康徳六年度各省弘報事務打合會議』에서 제시된 인민총복역제선전에서는 첫 번째로 “인민 일반이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강화하라”라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일반 대중들이 국민의를 가지게 되어야말로 본 제도 시행의 기본적인 선결조건이었으나 만주국의 태생적 한계 상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들이 군대, 군인에 대해 가진 부정적 인식들을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였다. 총복역제선전에는 신문을 비롯한 영화, 연극 등 가능한 모든 선전매체가 총동원되었다. 한편 병역법 공포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940년 2월 시점에서 만주국 정부는 기존 ‘병역법’이라 불리던 징병제도의 명칭을 ‘국병법’으로 바꾸었다.

1940년 4월 11일 상유와 더불어 제국 인민 남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병법 및 시행령 전문이 공포되었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된 만주국 국병법의 특징은 ‘精兵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병의 기준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체격의 良否이외에 장정의 소양, 가정환경의 요소를 아울러 포함시킴으로써 대량의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병제 하에서 지적되었던 군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정예군대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병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교육령이 공포되었다. 특히 병사들의 정신교육에 집중하여 건국정신을 실천하고 군인정신에 투철한 精兵, 良兵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3년 동안의 재영기간에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병사들에게 퇴역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향토의 중견 정예분자로서 지도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국병법 선전은 1940년 2월 무렵부터 본격 가동되었는데 기존 협화회 조직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각 성에 국병법을 선전하고 후방국민운동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즉 협화회 중앙본부에 국병법시행국민지도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쑤에는 국민지도성위

원회, 성사무국을 설치하고 「국민지도요강」을 발표하여 국병법선전에 돌입하였다. 본 요강에 따라 우선 징병의 당사자인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입대 전 예비교육 혹은 훈련을 적극 실시하였다. 기존 청년훈련을 담당했던 청년훈련소를 증설하고 청년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 학교에 군사교관을 배속하여 교련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병법의 원활한 시행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한편 국병법은 징병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가족은 물론 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국민운동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중심에는 협화회를 비롯한 국방부인회, 만주적십자사 등의 관변단체가 있었다.

국병법이 공포, 시행되는 1940년 4월에 이르면 만주국 정부의 국병법 선전은 한층 더 가열되었다. 수도 신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국병법 시행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했다. 곳곳에 국병법을 축하하는 표어가 나붙고 국병법 선전그림이 배포되었다. 이후 첫 번째 장정입영이 있기까지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에도 국병법을 위한 대민선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기간 영화, 신문 모두 국병법 선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활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선전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병법은 만주국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대중에게 제대로 침투하지는 못한 듯하다. ‘국민 없는 국가’라는 만주국의 현실을 직시했다면 아마 그것은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만주국 징병제도인 국병법은 단순히 부족한 병력 자원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병법 자체보다는 시행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 가운데서 청년은 물론 전체 대중들에게 국방의식, 국가의식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대중총동원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부록>

<장정검사의 기준>

| 구분   | 병역에 적당한 자                                       |   | 병역에 적당하지 않는 자                                   | 적부판정 곤란한 자   |
|------|---|---|---|--|
|      | 갑   | 을   | 병   | 정  |
| 소양   | 국민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들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 국민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들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 갑과 을 이외의 자                                      |  |
| 가정사정 | 생계 등 가정 상황이 양호하여 본인이 징집되어도 지장이 없어, 징집되기에 적당한 자  | 생계 등 가정 상황이 대체로 양호하여 본인이 징집되어도 큰 지장이 없어 징집되기에 적당한 자 | 갑과 을 이외의 자                                      |  |
| 체격등급 | 신장 1미터 55센티 이상의 자로 신체 강건한 자                     | 신장 1미터 55센티 이상의 자로 신체 갑에 다음가는 자                     | 신체 1미터 55센티 미만의 자이거나 질병 또는 기타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자 | 신체검사를 받는 해에 질병 중이거나 질병 후 기타 사유에 의해 체격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자 |

출처: 滿洲國軍刊行委員會, 1971, 『滿洲國軍』, 正光印刷株式會社, 598~599쪽.

## 참고문헌

### 1. 자료

- 『宣撫月報』(東京: 不二出版 復刊), 2006~2007  
『盛京時報』(瀋陽: 盛京時報社 復刊), 1985  
『協和運動』(東京: 綠蔭書房 復刊), 1994  
『滿洲國政府公報』(日本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滿洲國現勢』(新京: 滿洲國通信社), 1939~1941  
『偽滿史料叢書 偽滿軍事』(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993

### 2. 연구논저

- 윤휘탁, 2013, 『滿洲國: 식민지적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한민주, 2013, 『권력의 도상—식민지 시기 과시즘과 시각 문화』, 소명출판  
滿洲國軍刊行委員會 編, 1970, 『滿洲國軍』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東京: 財團法人滿蒙同胞援護會  
傅大中, 1988, 『偽滿洲國軍簡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和田春樹 外, 2011, 『東アジア近現代通史 第6卷, アジア太平洋戦争と『大東亞共榮圈』1935-1945  
年』, 岩波書店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1986,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一五年戦争期を中心に』, 東京: 時潮社  
貴志俊彦, 2010,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 東京: 吉川弘文館  
沈潔, 1996, 『『滿洲國』 社會事業史』,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解學時, 1995, 『偽滿洲國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山口猛, 1995, 『滿洲の記録—滿映フィルムに映された滿洲』, 東京: 集英社  
文繼斌, 2003, 『偽滿洲國時期的徵兵宣傳以 《濱江日報》 爲中心』, 『黑龍江史志』 2013-23  
南龍瑞, 2010, 『『滿洲國』における滿映の宣撫教化工作』, 『アゾア經濟』 51-8  
임성모, 1997, 『만주국협화회의 총력전체제 구상 연구—‘국민운동’ 노선의 모색과  
그 성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경선, 2012, 『전시체제 하 滿洲國의 선전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영수, 2008, 『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원병제도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수경, 2007, 『만주국의 사상전과 만주영화협회, 1937-45』,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경준, 2009, 『『만주국』조선인의 ‘皇國臣民’觀—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역사  
와 경제』 72  
최유리, 2000, 『일제 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蘭谷李銀順教授停年紀念  
史學論文集』

투고일 : 2017년 5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22일

■ Abstract ■

## The National Army Law as Propaganda in Wartime Manchukuo

Jeon, KyoungSu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National Army Law(國兵法) in wartime Manchukuo(滿洲國) through propaganda policy.

With imminent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n active mass mobilization movement began and established the wartime system in Manchukuo. From April 1939, the projects were discussed in name of People's Compensation Act (人民總服役制度). As a result, the system of military service in Manchukuo was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e volunteer system to the conscription system.

However, the reality of Manchukuo, which was as “a state without a member of the nation” differed fundamentally from government intentions of pursuing a conscription system, leading to a massive propaganda campaign. It was “Outline of National Instruction(國民指導要綱)” that the State published. This “outline” aimed at awakening nationality, which the general public needed as a means of promoting a Manchukuo identity. This was a basic precond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whose establishment was difficult to solve.

In contrary of the National Army Law, the Administration strengthened the post-national movement, which was aimed at not only the young, but the families of them. In the process, mass media such as movies and newspapers played important roles in popular propaganda.

However, despite of the all-round propaganda campaign, overcoming the reality of Manchukuo, “a state without nation” was futile. In conclusion, the campaign failed, but not without historical significance. I argue that the National Army Law had a two-prong objective. The National Army Law of Manchukuo

first aimed to mobilize, and second, to make nationalism or citizenship appealing to both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The signific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rmy Law is revealed in its propaganda work.